

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25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1. 14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5. 11. 14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5. 11. 26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주민생활과장 정영량)

가. 개정이유

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‘처우개선위원회’ 설치·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특성과 정책 요구를 파악하여 실태조사 실시(안 제6조제1항)
- 2) 고성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 신설(안 제12조)
- 3)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 조항 신설(안 제13조~제15조)
- 4) 위원회의 운영, 간사 조항 신설(안 제16조~제17조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2) 예산조치: 2026년 당초예산 편성 예정

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4486(2025. 9. 5.)호]

4) 기 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1412호

- 예고기간: 2025. 9. 1.~2025. 9. 22.(21일간)
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마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○ 개정 목적

본 개정조례안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약칭: 사회복지사법)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임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2조) 고성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등 기능의 근거 마련
- (안 제13조~제17조) 15명 이내 위원구성과 2년 임기에 한차례 연임을 규정하며,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 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

○ 종합검토 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법령에서 위임한 고성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1. 2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